



2008.09.19.

중국 식품 수입관리제도

목차

1. 중국 식품 수입관리제도

내용문의

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

(02-2194-7453, hahj100@khidi.or.kr)

□ 중국의 식품 수입관리제도

- 중국에 식품 수입시, 필요한 인 증은 “수입식품비준증서(進口食品批准證書)” 임.
- 수입절차 : 수입상 혹은 대리상은 동 식품 중문식품라벨(預包裝食品標籤通則)과 관련 통관 자료를 세관에 제출함. 2)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관련 지방부서(상해의 경우, 上海出入境檢驗檢疫局)에서는 세관에서 송부한 報驗單를 접수한 후, <<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(中華人民共和國食品衛生法)>>에 따라 식품을 검사하며 관련 법규와 표준에 부합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근무일 15일내에 <<위생검사통행허가통지서(衛生檢驗放行通知單)>>을 작성하여 제출함. 중국 관련 법규와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은 폐기, 수출국으로 반환, 타용 혹은 재가공후 식용 등 방식으로 처리함 3) <<위생검사통행허가통지서(衛生檢驗放行通知單)>>을 받은 식품은 중국에서 유통 가능함
- 소요시간 : 근무일 15일
- 소요비용 : 수입총액의 1.5%(제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비용은 유자차, 고추장, 된장 등 중국에서 유통이 비교적 활발한 식품에 대한 비용임)
- 기타 참고사항 : 2006년4월1일전, 수입식품은 반드시 <<수출입식품라벨심의 증명서(進出口食品標籤審核證書)>>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하며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관련 지방부서(상해의 경우, 上海出入境檢驗檢疫局)에서는 동 증명서가 있는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였음. 2006년4월1일부터 실시한 88호 <<입출경항구식품위생감독관리규정(出入境口岸食品衛生監督管理規定)>>에 따라 동 증명서의 심의가 폐지되었으며 수입상 혹은 대리상은 관련 표준인 預包裝食品標籤通則에 따라 중문식품라벨 전문 제작사에 주문 혹은 자체 제작도 가능함.
- 자료원 :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進出口食品安全局
蔡先生(86-10-8226-2023/25)
上海出入境檢驗檢疫局
郭先生(86-21-6854-9999*12313)